

사고 대비 기금 관리 규정

사단
법인

대한철인3종협회

제정	2013. 03. 07.
개정	2019. 02. 22.
개정	2020. 02. 06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한철인3종협회(이하 “협회”이라 칭한다)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협회가 대회 참가자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 협회의 소송비용 및 합의금을 지원하여 선수, 동호인, 협회 간의 상부상조의 기틀을 마련하고 트라이애슬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.<개정 2019.02.22.>

제2장 기금 적립 및 회비

제2조(기금적립) 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대회를 개최하기 전 대회 참가비에서 기금 적립금을 내야 한다.<개정 2019.02.22.>

제3조(회비금액) 협회에서는 각 대회의 총 참가비의 10%를 기금으로 적립한다. 단 대회의 규모와 제반여건에 따라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.<개정 2019.02.22., 2020.02.06.>

제3장 기금의 사용

제4조(기금의 사용) 협회 주최 및 주관 대회에서 불의의 사고 발생시 법률비용 및 참가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.<개정 2019.02.22., 2020.02.06.>

제5조(사용금액의 한도) 한 사고 당 최대 1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.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는 해당 대회 참가비에서 차입할 수 있다.<개정 2020.02.06.>

제4장 기금의 관리

제6조(기금의 관리) 이 기금의 사용은 협회 이사회의 승인하에서 사용될 수 있다.

제7조(규정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7일 이사회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22일 이사회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6일 이사회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